

## — 質疑와 有權解釈 —



여기에는 質疑応答 内容은 被保險者 医療保険組合, 医療機関 및 其他機関으로부터의 質疑에 대한 当局의 有權解釈입니다. 이 란은 会員病院의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固定 란으로 連載하고 있어오니 많은 參考바랍니다.

〈問〉 保険診療費 支給기일은 請求日로 부터 1個月인데 40~50일이 경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特히 직종 2종은 保険財政上 이유로 2개월 이상 遲延되고 있어 医療機関만 被害를 보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答〉 '83. 9月부터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으나 처리물량의 급증으로 效果를 거두지 못하다가 11月 중순 이후 크게 개선이 되었으며, 12月부터는 正常支給이 可能할 것임.

〈問〉 '83년도판에 Bone graft가 免除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 및 체외금속 고정술에 도수정복술과 피부견인술을 適用하도록 한 것도 술식으로 보아 도수정복술과 사지골견인술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思料되는 데 이에 대한 이유는?

〈答〉 保社部 給與 1492 - 16052号 (83. 11. 15)로 Bone graft에 대한 것은 시달되었으며, 체외금속 고정술의 酬価는 관계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保社部에 建議할 것임.

〈問〉 抗生剤 및 高価薬 注射를 일률적으로削減시키는데 정확한 기준설정이 要望되며, 削減한 경우 患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答〉 診療酬価 基準額表 中 療養給与 基準 II · 診療基準을 參考하시기 바라며 削減된 부분에 대해서는 患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問〉 관절경 검사(나, 750)의 酉価가 13,000

원으로 認定되어 있는 데 이 검사의 特수 성상전신 또는 척추 마취하에서 엄밀한 無菌狀態에서 1時間 정도씩 檢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 酉価算定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答〉 관계학회와 협의하에 特수성을 감안하여 6,500원에서 13,000원으로 100% 引上되었음.

〈問〉 先天性 고관절 탈구時 골반골 골절 및 관절적 관절 정복술을 同時に 할 시 그 適用項目은?

〈答〉 자59(척추 또는 골반골절 및 탈구의 관절적 정복술)로 算定하기 바람.

〈問〉 골암 및 골종양 검사시 조직검사(生検) 시 부위별로 수가 책정여부는?

〈答〉 現在 자44(골시험생검술)가 가, 나로 区分되어 있어 請求時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차후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면 再検討 하겠음.

〈問〉 위염에는 제산제가 認定 안 된다고 하였으나 初診時 소화기 장애를 呼訴할 때 소화성궤양의 감별치료로 항궤양 치료제를 投藥하는 경우 위궤양 病名도 기재해야 되는지 与否?

〈答〉 위염에 제산제는 認定되고 있으며 모든 患者에게 궤양치료제 投藥은 이해하기 곤란함.